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학력·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변경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고급감리원	40시간 이하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0시간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 나.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급·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